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01호

시정권고 재결

2025년 12월 31일 부산지방법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1호(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42호
(예인선 부경103호의 피예인부선 광진1501호, 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부경103호의 피예인부선 광진1501호 · 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김**(* ***,*.*.*)

경*** ** * ** *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신성호가 2025. 4. 5. 10:1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연도방파제 남방 해상(북위 35도 03분 33초 · 동경 128도 45분 06초)에서 부경103호 예선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경103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묘박 중인 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묘박 중인 신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묘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릴 것을 시정 권고하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